

## 출연지원

- 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☑ 지원대상  
중소·중견기업
- ☑ 신청시기  
1/4분기

## 3-1.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

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

## ● 지원대상

-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중소·중견기업
  - 201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 이상  
(단, 시스템SW 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)
    - ※ 「산업발전법」 시행령에 의한 공공기관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제외
  - 최근 3년간('11~'13년) 매출액 대비 R&D투자비율이 평균 2%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('09~'13년)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CAGR)이 15% 이상인 기업
- 20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(ATC) 사업,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
  - 현재 ATC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신청 가능하나 'World Class R&D 지원 사업'은 ATC 과제 종료 이후 지원이 가능
  -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해당사업 종료 이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신청 가능

## ■ World Class 기업의 개념

-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,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, 거래,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
  - (양적 규모)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
  - (질적 특성) 지속적 혁신,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, 높은 성장성
    - 지속적 혁신 : 제품·기술·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
    - 거래관계의 독립성 :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,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
    - 높은 성장성 :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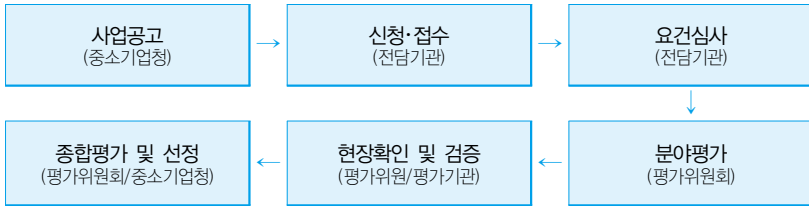
## :: 지원내용

-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

구분	지원내용	지원기관
기술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·응용기술개발 지원 (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)</li> <li>- 총 개발비의 50% 이내에서 3~5년간 지원 (연간 15억원 내외)</li> </ul>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시장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</li> <li>- 최장 5년간 연 1.4억원 내외(기업 50% 부담)</li> <li>•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글로벌 파트너십 사업(GP) 자동편입</li> </ul>	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
인력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</li> <li>-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(기업당 2명, 최장 6년간)</li> <li>- 기술·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(기업당 4명, 최장 2년간)</li> <li>- 해외 전문인력 발굴·유치 지원</li> </ul>	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
자금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</li> <li>- 한국수출입은행-한국형 히든챔피언</li> <li>- 정책금융공사-Frontier Champ</li> <li>- 한국무역보험공사-Trade Champ</li> <li>- 기업은행-수출·기술 강소기업</li> <li>- 산업은행-KDB Global Star</li> <li>- 농협은행-WC300기업 종합지원</li> <li>- 하나은행-WC300기업 지원</li> <li>•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</li> </ul>	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, 농협은행, 하나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
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</li> <li>- 경영 컨설팅(企銀), 글로벌화컨설팅(輸銀), IPO컨설팅(KRX),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컨설팅(특허청), IP활용 전략 지원(한국발명진흥회), IP컨설팅(ID社) 등</li> </ul>	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R&D특허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(주)

\* 평가 결과 일부 기업은 기술 확보(R&D)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● 추진절차



\* (전담기관) 한국산업기술진흥원

## ●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. 2. 24(월) ~ 3. 19(수)
- 신청방법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www.pms.re.kr)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,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

### 문의처

[www.kiat.or.kr](http://www.kiat.or.kr)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(02)6009-3913, 4353, 4355  
정보화전략팀 (02)6009-4375, 4376
- 중소기업청 혁신지원과

#### 출연지원

- 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☑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☑ 신청시기  
1/4분기

## 3-2.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

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(First mover)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'지정공모 방식'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

### ❖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-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(다음 4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)
    - 전년도 직전수출 실적 3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    - \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.5% 이상인 기업
    - 최근 3년('11~'13)간 직수출실적 평균 3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     - \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.5% 이상인 기업
    - 중소기업청 '글로벌 강소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
    - 중소기업청 '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'에 선정된 기업
      - ※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"World Class R&D 지원사업" 수행 중인 기업은 과제종료 이후 신청 가능
  - 투자연계과제(다음 4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)
   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.5% 이상인 기업

## ☞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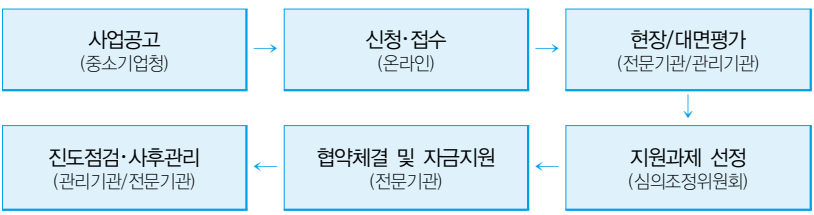
- 지원규모 : 297억원(신규)
- 세부 내용

구분	지원내용	지원 예산	총 사업비	지원 기간	정부출연금
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(지정공모)	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 발굴·지원	171억원	10억원 (연간 5억) 이내	2년 이내	총 사업비의 60% 이내
투자연계 (지정공모)	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	126억원	5억원 이내		

- 기술료 납부 :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‘성공’ 또는 ‘성실수행’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  
\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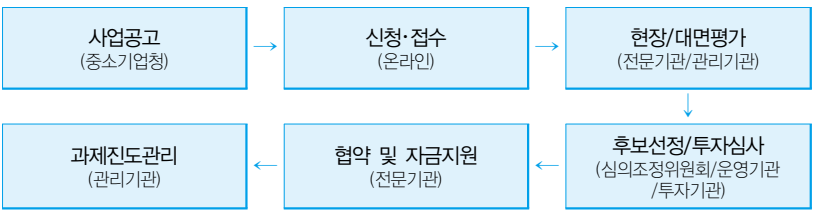
## ☞ 추진절차

- 글로벌 강소기업육성과제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- 투자연계과제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(운영기관)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## ☞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. 3. 10(월) ~ 3. 31(월)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

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

- 중소기업 R&D클러스터 1661-1357(내선 1)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(042)715-2335
- 한국벤처캐피탈협회 (02)2156-2131~5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
## 출연지원

- 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☑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☑ 신청시기  
1/4분기

## 3-3.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

빅데이터, 컴퓨터 S/W, IoT(사물인터넷),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, 제조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

## :: 지원대상

-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
  - 벤처기업
  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- 유의사항 :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·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회(1개 과제)만 신청 가능
  - \*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

## ::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690억원(신규)

지원분야	지원예산	사업비 및 기간	정부 출연금	지원방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</li> <li>• 41개 전략품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차 : 410억원</li> <li>• 2차 : 280억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억원(연간 2.5억원) 이내</li> <li>• 2년 이내</li> </ul>	총 사업비의 75% 이내	자유응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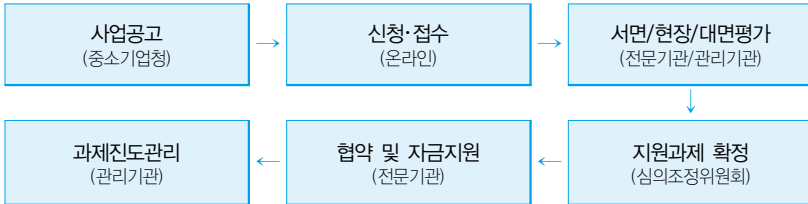
## ■ 20대 전략분야

- 녹색제조분야 : 에너지변환저장, 예코조명건축, 친환경생산, 에너지자원활용, 제조기반, 무기 소재공정, 화학소재공정, 수송기계, 산업용기계
- 첨단융합분야 : ICT융합, 로봇응용, 나노융합, 바이오, 의료기기, 차세대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컴퓨터 SW, 디지털콘텐츠, DTV, 안전보안

- 기술료 납부 :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‘성공’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\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### 추진절차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###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. 2. 10(월) ~ 2. 27(목)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#### 문의처

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

- 중소기업 R&D클러스터 1661-1357(내선 1)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(042)715-2325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


## 출연지원

- 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☑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☑ 신청시기  
2/4분기

## 3-4.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

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

## ::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
  - \*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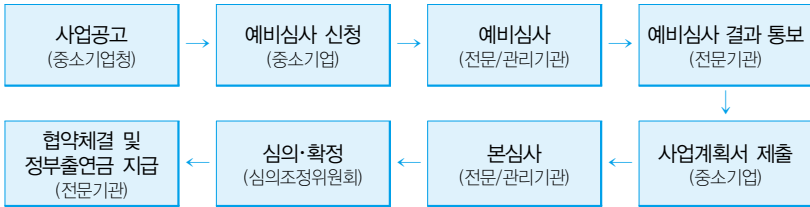
## ::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155억원(신규)
- 세부 내용

구분	지원내용	지원 예산	사업비 및 기간	정부 출연금
제품 서비스 (지정공모)	모바일 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신제품 개발	70억원	2억원 이내, 1년 이내	총 사업비의 75% 이내
제품 서비스 (자유응모)	전 사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·신기술 및 플랫폼 개발	85억원		
지식 서비스 (자유응모)	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		1.5억원 이내, 1년 이내	

- 기술료 납부 :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'성공'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  - \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## 추진절차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(멘토링기관) 한국업전문가협회

##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. 4. 9(수) ~ 2014. 5. 9(금)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(www.smetch.go.kr)에서 온라인을 통한 제안서 신청·접수

### 문의처

[www.smetch.go.kr](http://www.smetch.go.kr)
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&D고객센터 1661-1357(내선 1)
- (사)한국업전문가협회 (02)853-5559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
#### 출연지원

- 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☑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☑ 신청시기  
1. 2/4분기

### 3-5.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

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·복합형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고, 개방형 R&D 활성화 및 융·복합기술 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

#### ●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
  - ※ (관련 페이지)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: p.72
-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(2개 기관)을 구성하여 지원
  - ① 융·복합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
    - 주관기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    - 공동개발기관 :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,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
  - ② 센터연계형과제
    - i) 일반기술유형
      - 주관기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      - 공동개발기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
    - ii) 농공상용융합유형
      - 주관기관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      - 공동개발기관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·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‘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’

## ∴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366억원(계속과제 포함)
- 세부내용

구분		지원분야	지원 예산	사업비 및 기간	정부출연금
융·복합형 기술개발 (지정공모)	산연 협력과제	기술수요조사, 연구용역, 융합지원 센터 등에서 발굴·기획된 첨단융합 기술개발 지원	173억원	6억원 이내 2년 이내	총 사업비의 60% 이내
	이전 기술과제	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융·복합과 관련하여 상용화되지 않은 이전기술 개발	59억원		
센터연계형			260억원		

- 기술료 징수
  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‘성공’ 또는 ‘성실수행’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  - \* 기술료를 일사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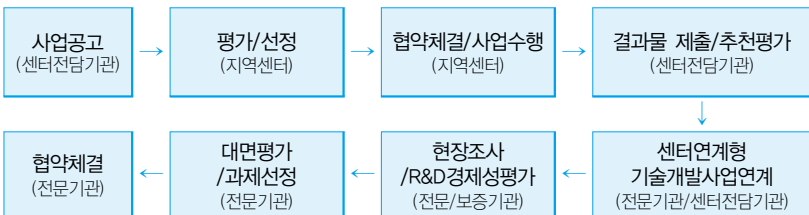
## ∴ 추진절차

- 융·복합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



\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/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

- 센터연계형과제



\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/ (센터전담기관) 중소기업융합중앙회 (보증기관) 기술신용보증기금 / (지역센터) 대표기관, 참여기관 등

## ● 신청절차

- 신청시기
  - 융·복합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 : 2014. 2. 28(금) ~ 2014. 3. 31(월)
  - 센터연계형과제 : 2014. 4. 3(목) ~ 2014. 5. 2(금)
- 신청방법
  - 융·복합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 :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  - 센터연계형과제 : 해당지역센터별 온라인 또는 우편, 인편으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### 문의처

[www.tipa.or.kr](http://www.tipa.or.kr)

- 중소기업 R&D플랜터 1357
- 중소기업융합중앙회 (02)769-6436, 37
- 기술보증기금 (032)830-5719
-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

출연지원

-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신청시기  
1, 2, 3/4분기

### 3-6.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
수요처(정부·공공기관·대기업)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보장을 지원하는 사업

#### ❖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

※ (관련 페이지)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: p.72

\*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

#### ❖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442억원(신규)
-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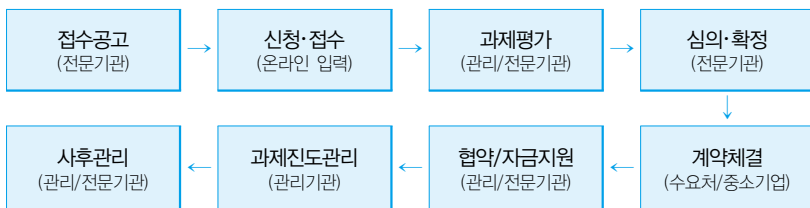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과제	사업비 및 기간	지원 규모	정부출연금
수요조사 과제 (지정공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</li> <li>• 국방·기상·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 전략과제</li> <li>•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(조합, 단체, 병원 등)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</li> <li>•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다수의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안한 과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억원 이내 (연간 최대 2.5억원)</li> <li>• 2년 이내</li> </ul>	442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간 : 총 사업비의 55% 이내</li> <li>• 공공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</li> </ul>
중소기업 제안과제 (자유응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(기술)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'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'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.5억원 이내</li> <li>• 1년 이내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총 사업비의 75% 이내</li> </ul>

- 기술료 징수
  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'성공'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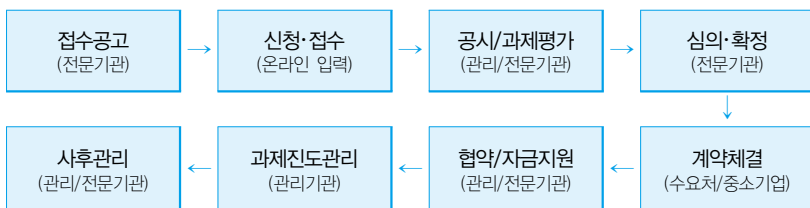
\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## ● 추진절차

### ● 수요조사과제(지정공모)



### ● 기업제안과제(자유응모)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## ● 신청절차

### ● 신청시기 : 2014년 1월 10(금)일부터 수시 접수(사업비 소진시까지)

〈수요조사과제〉

- 1차 : 2014. 3. 25(화) ~ 4. 24(목)
- 2차 : 2014. 6. 5(목) ~ 7. 4(금)

〈중소기업 제안과제〉

- 1차 : 2014. 3. 25(화) ~ 4. 9(수)
- 2차 : 2014. 4. 14(월) ~ 5. 13(화)
- 3차 : 2014. 5. 14(수) ~ 6. 30(월)

### ● 신청방법 :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문의처



[www.keit.re.kr](http://www.keit.re.kr)
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&D고객센터 1357(내선 2)
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(02)368-8750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
출연지원

- 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☑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☑ 신청시기  
1/4분기

### 3-7.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

해외 수요처(바이어)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
#### ●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

※ (관련 페이지)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: p.72

#### ●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120억원
- 세부내용

세부 사업	지원과제	사업비 및 기간	정부 출연금
글로벌 협력 (지정공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글로벌 수요처에 필요로 하는 신기술·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</li> <li>① 운영기관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이하 KOTRA))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과제 선정</li> <li>② 운영기관(KOTRA)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'구매의향서'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</li> <li>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'구매의향서'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</li> </ul>	5억원 이내, 2년 이내	총 사업비의 50% 이내
기업제안 (자유응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외수요처(바이어)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</li> <li>① 해외수요처(바이어)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 기업 신용조사 결과, E등급 이상일 것(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)</li> <li>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~1년 이내일 것</li> <li>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,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</li> <li>④ 구매예상액이 총사업비의 1배 이상</li> </ul>	15억원 이내, 1년 이내	

\* 해외수요처 범위 :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,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, 해외도·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 법인(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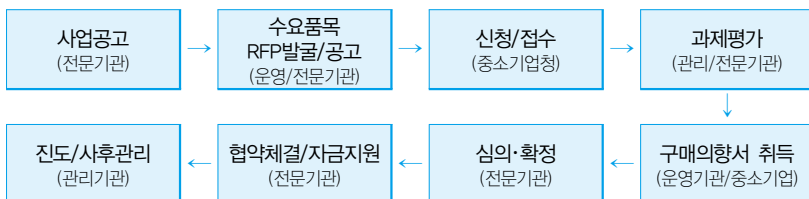


- 기술료 납부 :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‘성공’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\*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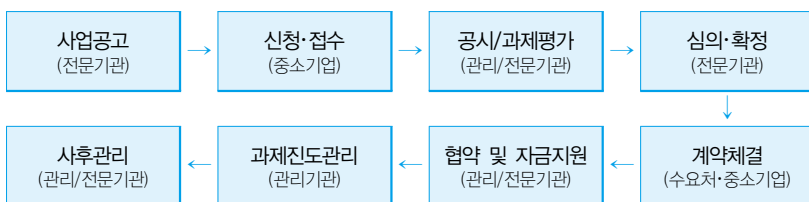
## ● 추진절차

- 글로벌협력과제



\* (관리기관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, (운영기관) KOTRA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- 기업제안과제



\* (관리기관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, (운영기관) KOTRA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## ● 신청절차

- 신청시기
  - 2014년 2월 10일(월)부터(사업공고일)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### 문의처

www.keit.re.kr

- 중소기업 R&D고객센터 1357(내선 2)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1357(내선 1)
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(02)368-8750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파트너링팀 (02)3460-7848, 7207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
출연지원

-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신청시기  
연중수시

### 3-8.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

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 (협력펀드)을 미리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

#### ❖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
  -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으로부터 ‘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’를 발급받아 제출
  -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‘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’를 발급받아 제출

※ (관련 페이지)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: p.72

#### ❖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500억원(신규과제 457억원 내외, 계속과제 43억원 내외)
- 세부내용

세부사업	지원과제	지원 예산	사업비 및 기간	정부 출연금
수요조사과제 (지정공모)	•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	260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억원 이내</li> <li>• 3년 이내</li> </ul>	총 사업비의 75% 이내
미래전략과제 (컨소시엄)	•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	50억원		
기업제안과제 (자유응모)	• 중소기업이 아이디어(기술)를 투자 기업에 제안하여 ‘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’를 받아 제출한 과제	95억원		
직접사업화과제 (자유응모)	•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·연구 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 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	50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억원 이내</li> <li>• 2년 이내</li> </ul>	총 사업비의 100%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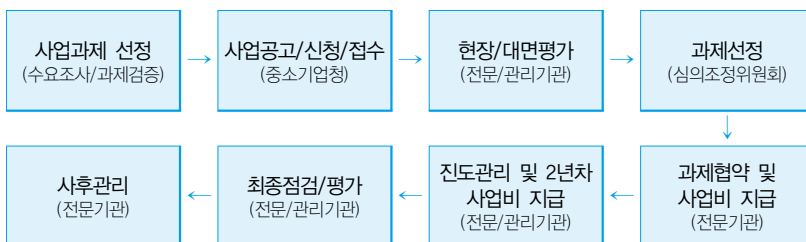
### ■ 협력펀드 참여 수요처 현황(공고일 현재 기준)

- 민간부문(13개) : 포스코, 인켈,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기, LS엔트론, 한국항공우주산업, 현대중공업, 삼성SDI, 대우조선해양, 현대홈쇼핑, 삼성전자, 한솔테크닉스, SK텔레콤
- 중견기업(11개) : 주성엔지니어링, 다산네트웍스, 인성정보, 파워로직스, 루멘스, 미래나노텍, 케이엠더블유, 크루셀텍, 한국델파이, 오텍캐리어, 대교
- 공공부문(14개) :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지역난방공사, 인천항만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석유공사

※ 참여수요처는 협력펀드 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

- 기술료 납부 :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'성공' 또는 '성실수행'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  
\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### ∴ 추진절차



\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관리기관)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

### ∴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년 사업공지 이후 당해연도 자금 소진시까지  
\* 단, 지원대상과제는 회차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내용을 확인 요망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#### 문의처

www.tipa.or.kr

- 중소기업 R&D플랫폼 1357 (내선 2)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(042)388-0219, 22
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(02)368-8710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
출연지원

-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신청시기  
1, 2, 3/4분기

### 3-9.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

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

#### ❖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기업
  - \* (관련 페이지)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: p.72
  - 창업과제 :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
    - 투자연계멘토링 :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
  - 1인 창조기업 과제 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    -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(1인 창조기업 3년 유예)도 포함
    - 특례기업 :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
    - \*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은 사업공고 확인

구분	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
제조업	식료품 제조업	10
	음료 제조업	11
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16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7
	전기장비 제조업	28
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
	가구 제조업	32
기타 제품 제조업	33	

구분	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
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	출판업	58
	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	59
	통신업	61
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	정보서비스업	63
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연구개발업	70
	전문서비스업	71
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	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
사업지원서비스업	사업지원 서비스업	75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창작,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90
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	섬유제품 제조업	13
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	14
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
	온라인 교육학원	85504
	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	85659

## ::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1,068억원
-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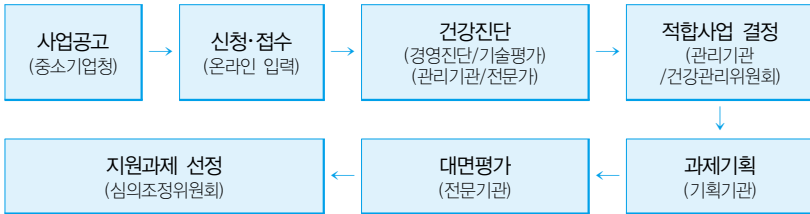
세부사업		지원내용	지원 예산	사업비 및 기간	정부출연금
창업 과제	건강진단 연계	•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	1,068억원	• 2억원 이내 • 1년 이내	총 사업비의 90%
	투자연계 멘토링	•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지원	150억원	• 2억원 이내 • 1년 이내	
1인 창조기업 과제	• 신기술·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	96억원	• 1억원 이내 • 1년 이내		

- 기술료 납부 :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'성공'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\*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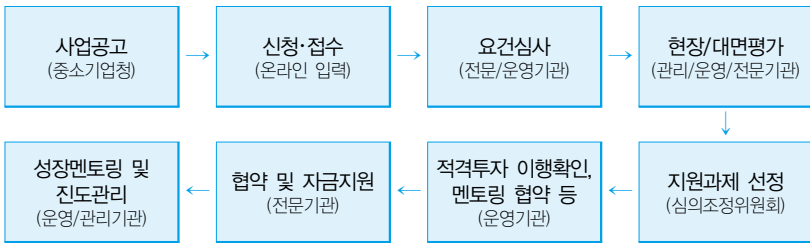
## ❖ 추진절차

- 창업과제(건강진단연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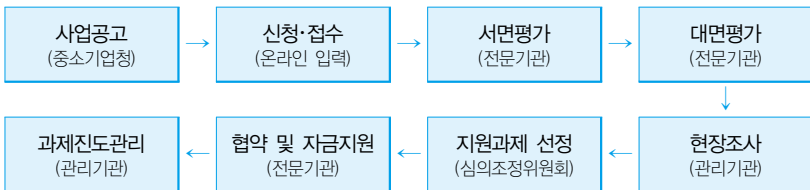
\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건강관리위원회) 지방중기청, 중진공 지역본부, 신보 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

- 창업과제(투자연계멘토링)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운영기관)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- 1인 창조기업 과제



\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

## ● 신청절차

- 신청시기
  - 창업과제(건강진단연계) : 격월(2·4·6·8월) 1 ~ 10일
  - 창업과제(투자연계멘토링) : 2014. 2. 10(월) ~ 4. 22(화)
  - 1인 창조기업 과제 : 2014. 2. 17(월) ~ 4. 4(금)
- 신청방법
  - 창업과제(건강진단연계) : 중소기업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 기관에 방문신청
  - 창업과제(투자연계멘토링) 및 1인 창조기업 과제 :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(www.smetech.go.kr)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·접수 혹은 우편 접수

### 문의처

[www.smba.go.kr](http://www.smba.go.kr), [www.smetech.go.kr](http://www.smetech.go.kr)

- 중소기업 R&D 콜센터 1357(내선 2)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(042)388-0212, 14, 17
-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지원팀 (02)2156-2131~3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

### 출연지원

-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지원대상  
예비창업자
- 신청시기  
2/4분기

## 3-10.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

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(예비)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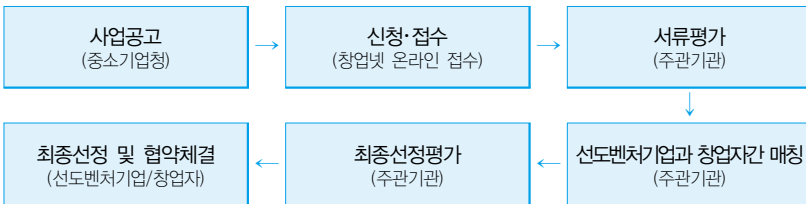
### ❖ 지원대상

-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창업자 또는 (예비)창업자
  - ※ (예비)창업자의 경우 2인 이상으로 신청

### ❖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75억원(80개 창업팀 내외)
  - 정부지원금 최대 9천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70% 이내
- 세부내용
  - 창업인프라 구축비 : (예비)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조성(임차료 등) 및 비품구입비 등
  - 정보활동비 :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멘토비, 기술·경영 자문비, 교육비, 학회참가비, 창업관련(기술, 경영, 회계, 마케팅 등) 참고문헌 등
  - 시제품제작비 : 창업과제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
  - 지적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: 특허,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
  - 마케팅비 : 국내·외 전시회 참가,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, 시장조사비 등
  - 공통경비 : 경영, 기술, 마케팅 등 창업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워크숍 개최비용, 우수 (예비)창업자 해외연수 비용 등

### ❖ 추진절차



\* (주관기관) 벤처기업협회, 한국여성벤처협회



## ☞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. 4. 2(월) ~ 4. 18(금)
- 신청방법 : 창업넷([www.changupnet.go.kr](http://www.changupnet.go.kr))에서 온라인 접수

### 문의처



[www.venture.or.kr](http://www.venture.or.kr)

-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(02)6331-7086, 87
- 한국여성벤처협회 (02)2156-2166, 62, 76
-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(042)480-4341
-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

### 출연지원

-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지원대상  
예비창업자
- 신청시기  
2/4분기

## 3-11. 창업맞춤형사업

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,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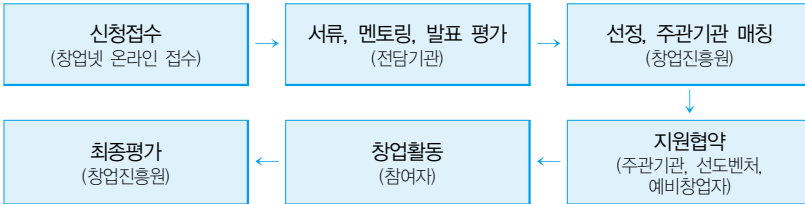
### :: 지원대상

-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또는 (예비)창업자

### ::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499억원 / 900개 과제 내외
  - 정부지원금 최대 9천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70% 이내
- 세부내용
  - 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지원
  -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### :: 추진절차



\* (전담기관) 창업진흥원

### ::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. 4. 3(목) ~ 4. 22(화)
- 신청방법 : 창업넷(www.changupnet.go.kr)에서 온라인 접수

### 문의처

[www.kised.or.kr](http://www.kised.or.kr)

- R&D 상담콜센터 1357(내선 3)
-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 (042)480-4342, 49
-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

## 출연지원

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
☑ 지원대상  
중소기업

☑ 신청시기  
1, 2, 3/4분기

## 3-12.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

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·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

## ::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

※ (관련 페이지)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의 업종 : p.72

## ::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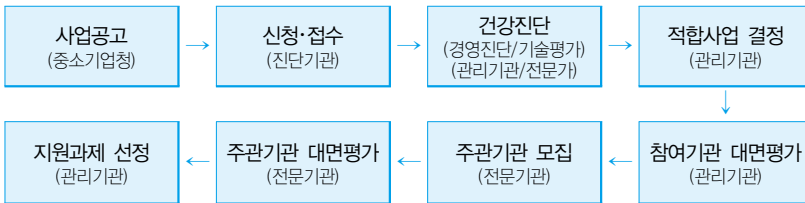
- 지원규모 : 1,401억원
- 세부내용

세부사업	지원내용	지원 예산	사업비 및 기간	정부출연금
첫걸음 기술개발	정부 R&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	400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억원 이내</li> <li>• 1년 이내</li> </ul>	정부 75% 이내 (지자체 지원금 포함)
도약기술개발	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·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	478억원		
연구마을	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/이전하는 중소기업	120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.5억원 이내</li> <li>• 1년 이내</li> </ul>	75% 이내
산연전용	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&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	120억원		
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	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	73억원		
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	우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유망(예비) 창업팀	210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억원 이내</li> <li>• 3년 이내</li> </ul>	90% 이내

### ■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

구분	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
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노비즈/벤처/경영혁신형 미인증 기업</li> <li>• 이공계분야 석·박사급 연구인력 미보유 기업 등</li> </ul>
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·성장이 가능한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별 평균 이하인 기업</li> <li>• 최근 3년간 종업원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업 (퇴사 대체인력 채용 불인정)</li> <li>• 그 외 신기술·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성장이 필요한 기업 등</li> </ul>
기업부설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</li> </ul>

### ∴ 추진절차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기청, (전문기관) 한국산학연합회  
(진단기관) 지방중기청, 중진공지역본부, 신보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

### ∴ 신청절차

- 신청시기
  - 첫걸음 기술개발·도약 기술개발 : 격월(2·4·6·8월) 1~10일까지 접수, 총 4회
  -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 :
    - (산연전용) 2014. 2. 10(월) ~ 2. 21(금)
    - (연구마을) 2014. 4. 1(화) ~ 4. 14(월)
    - (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) 2014. 4. 1(화) ~ 4. 14(월)
- 신청방법 :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tech.go.kr](http://www.smttech.go.kr))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

### 문의처

<http://auri.or.kr>

- R&D 상담콜센터 1661-1357
- 한국산학연합회 사업지원본부 (042)720-3351, 52, 53
-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

## 출연지원

-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신청시기  
1, 2, 3/4분기

## 3-13. 제품·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

R&D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·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향상,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 지원

## ::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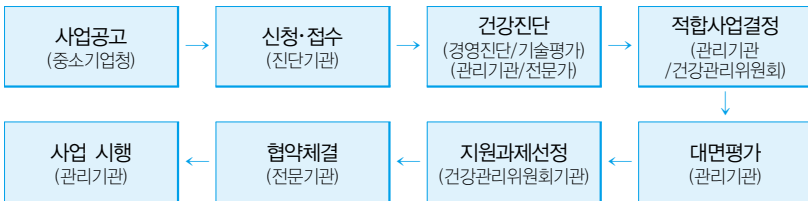
※ (관련 페이지)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: p.72

## ::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300억원(신규과제 600개)
- 세부내용

세부사업	지원내용	사업비 및 기간	정부출연금
제품개선	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,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	• 5천만원 이내	총 사업비의 75% 이내
공정개선	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	• 9개월 이내	

## :: 추진절차



\* (관리기관) 지방중기청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
(진단기관) 지방중기청, 중진공지역본부, 신보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

## ●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격월(2·4·6·8월) 1~10일까지 접수, 총 4회
- 신청방법 : 관할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·접수

### 문의처



[www.tipa.or.kr](http://www.tipa.or.kr)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&D 상담콜센터 1357(내선 2)
-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
  - 서울지방중소기업청 (02)2110-6358~66
  - 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(051)601-5137, 38, 46, 47, 50, 52
  - 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 (053)659-2287~9
  - 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(062)360-9151, 58, 59
  - 경기지방중소기업청 (031)201-6971~80
  - 인천지방중소기업청 (032)450-1152~8
  - 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(042)865-6131, 35, 36, 56, 58, 40
  - 강원지방중소기업청 (033)260-1631~3, 36
  - 충북지방중소기업청 (043)230-5332, 33, 48
  - 전북지방중소기업청 (063)210-6441~5
  - 경남지방중소기업청 (055)268-2551, 53~55, 58
  - 제주시험연구센터 (064)723-2101~3

#### 출연지원

- ☑ 관련부처  
중소기업청
- ☑ 지원대상  
중소·중견기업
- ☑ 신청시기  
2/4분기

### 3-14. 중소·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지원 사업

중소·중견기업 협력강화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하고자 사전기획을 통한 신성장아이템 발굴 및 발굴된 아이টে에 대한 상세기획 등을 지원

#### ● 지원대상

- 중견기업(후보기업 포함) 및 협력사(3개 이상)
- 주관기관 :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
  - 2013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(단, 시스템SW개발공급업<sup>1)</sup> 등은 100억원 이상)인 전 업종 중소기업<sup>2)</sup>·중견기업<sup>3)</sup>
  - 1)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(산업분류 58221), 응용 SW개발공급업(산업분류 58222)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·관리업(산업분류 620), 온라인·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(산업분류 58211)
  - 2)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
  - 3) 중견기업은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 2-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- 단,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‘공공기관’, ‘금융업’, ‘보험 및 연금업’, ‘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’은 지원제외 대상임
- 참여기업 :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협력사로 ‘중소기업기본법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 - ※ 우대사항 : 이노비즈기업, 뿌리기술전문기업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십기업

#### ●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정부출연금 총 19억원(지원과제 20개 내외)
- 세부내용 : 사전기획을 통한 신성장아이템 발굴 및 발굴된 아이টে에 대한 상세 기획, 공정혁신 등을 수행하기 위한 동반성장 클러스터\* 운영 지원
  - \* 동반성장 클러스터 : 중견기업(후보기업 포함), 중소기업(협력사), 기술전문가(대학, 연구기관), 컨설팅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신성장아이টে에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상세기획, 시장진출 전략을 구축하며, 참여기업에 대한 공정혁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는 공동협의체
- 지원기간 : 최대 7개월
-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75%(클러스터당 최대 80백만원)